

2020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전형 모집 요강

2020. 1.



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재부여 하기 위함

2. 관련 법 및 규정

-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 나. 대구대학교 학칙 제13조(재입학자격)
- 다. 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규정 제13조(재입학)
- 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공포 관련 재입학 설명자료 송부(대학학무과-923, 2006.2.10.)
- 마. 정원외 재입학 여석산정 기준 조정 통보(대학학무과-3465, 2006.5.19.)
- 바. 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규정 변경 안내문(교원양성연수팀, 2012.11.30.)
- 사. 교원양성기관 정원 운영 지침(교원양성연수과, 2018.11.5.)

3. 지원 자격

- 가. 우리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
- 나. 학칙 제82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된 학기를 제외하고 두 학기가 경과해야 재입학 신청 가능

4. 여석산정 방법

- 가. 직전 학기 또는 직전 학년도의 재적생 변동 상황에 명시된 제적자를 기준으로 산정
 - 1) 총 정원은 주간과 야간 및 정원 내·외로 구분
 - 2) 여석산정 시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음
 - 3) 정원 외는 전형유형별 관계없이 정원 외 총 여석 내에서 선발
- 나. 사범대학
 - 1) 정원 내·외로 구분
 - 2)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충원(결원된 학년에만 충원)
- 다. 의료인력 양성학과(물리치료, 작업치료, 간호학과)
 - 1) 정원 내외 포함 재적인원이 입학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만 충원

5. 일정

내 용	일 시	장 소
접수 기간	2020. 1. 13.(월) ~ 17.(금) 17:00까지	종합정보시스템(TIGERS+)
합격자 발표일	2020. 1. 23.(목) 예정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고지서 교부일 (8학기 초과자 제외)	2020. 1. 28.(화) ~ 31.(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출력) 가능
등록기간		가상계좌 또는 대구은행
8학기 초과자 등록기간	2020. 2. 25.(화) ~ 27.(목)	가상계좌 또는 대구은행
수강신청 기간	2020. 2. 3.(월) ~ 5.(수)	장바구니 수강신청
	2020. 2. 17.(월) ~ 20.(목)	정규 수강신청(재학생 수강신청기간과 동일하며 17일(월)은 장애학생 수강신청일)

※ 등록기간에 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8학기 초과자 제외)

※ 정부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등록기간 이전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등록기간에 학자금 대출 실행을 하여야합니다.(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6. 재입학 모집 인원

모 집 단 위		모집 인원	
		정원 내	정원 외
주간학과(사범대학, 의료관련학과 제외)		181	26
야간학과(보건행정학과 제외)		2	1
보건행정학과(야간)		0	1
의료관련학과(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간호학과)		0	0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	0
	영어교육과	2	1
	역사교육과	1	0
	지리교육과	3	1
	유아교육과	1	0
	유아특수교육과	0	1
	수학교육과	2	0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전공)	1	0
	과학교육학부(화학교육전공)	1	0
계		195	31

※모집인원의 “정원 외”는 신입 및 편입학 시 전형유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학사편입학, 특별편입학,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7. 접수 방법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TIGERS+) → 학적·졸업 → 학적관리 → 재입학신청]에서 전화번호 입력 후 오른쪽 상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취소 시 ‘삭제’ 버튼 클릭)

가. 제적 전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재입학 접수기간 내에 교무학사부로 전공배정 신청서 제출(서식은 붙임 참조)

나.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시 ID는 학번이며, 학번을 모르실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메인화면에서 ‘아이디 찾기’를 클릭 후 해당 절차에 따라 수행 후 확인 가능

다. 학번 및 비밀번호를 모르실 경우 교무학사부(850-5132)로 연락하여 확인 가능

8. 전형 방법

가. 지원자 수가 모집정원 이내일 경우에는 지원자 전원 합격처리

나. 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 1) 총 평점평균 상위자
- 2) 상위 학년(기)자
- 3) 제적일자 오래된 자 순으로 선발

다.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나’항의 순위에 의하여 충원

9.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제적(퇴학)전 모집단위 학부(학과, 전공)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제적 전에 이수한 학점과 등록학기 등은 그대로 인정함

※ 다른 학부(학과, 전공) 등으로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나. 모집단위별 재입학 모집인원이 없는 모집단위로는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음

다. 정원 외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제적된 자는 모집단위의 정원 외 전형유형별에 관계없이 정원 외 총 여석 내에서 재입학할 수 있음

라.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포함되며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마. 재입학생 중 8학기 초과자(4학년)는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후 8학기 초과자 등록기간 [2020. 2. 25.(화) ~ 27.(목)]에 재입학금 및 수업료(학점단위)를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수강신청 후 [2020. 2. 25.(화) ~ 27.(목)]동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확인)가능하며, 재입학금 및 수업료는 대구은행으로 납부]

바. 문의처: 대구대학교 교무처 교무학사부(☎850-5132)

10. (필독)신입생 모집중지 및 모집단위 통합대상학과 관련 안내사항

가. 신입생 모집중지 학과

1) 대상학과

가) 2020학년도까지 존속학과: 독어독문학과, 골프산업학과, 물리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나) 2022학년도까지 존속학과: 러시아어러시아학과

2) 학년도별 경과조치에 의하여 강의 개설이 원활하지 않아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입학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단위 통합학과

1) 통합 전 학과는 2018학년도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까지 졸업을 못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통합 후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통합 전	통합 후
국어국문학과	한국어문학과
국제한국어교육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의생명과학과	

2) 통합 전 학과는 2020년도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까지 졸업을 못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통합 후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단, DU인재법학부 법학전공, 공직법학전공으로의 전공배정은 2학년 1학기로 재입학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통합 전		통합 후	
법과대학	공법학전공	DU인재법학부	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공직법학전공
	공공안전법학전공		
원예학과		생명환경학부	원예학전공
생명환경학부	바이오산업학전공		바이오산업학전공
	식품환경안전학전공		

다. 재입학 제한사항

1) 모집중지 학과 및 통합학과 재입학 신청자는 예상되는 졸업년도까지 전공학점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입학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와 재입학 후 소속관련 ◆

1. 제적 전 학과(부)가 명칭변경, 통합된 경우 재입학 후 학칙 등에 의하여 재학(적)생과 동일 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속이 변경됩니다.

가. 인문교양대학(S-LAC)

- 국어국문학과, 국제한국어교육과, 한국어문학·문화학과, 국제학부 한국어한국학전공: 한국어문학과
- 중어중문학과: 중국어중국학과
- 일어일문학과: 일본어일본학과
- 노어노문학과(야), 서양어문학부(야), 노어노문학과, 러시아어러시아학과: 폐지(2023.2.28.까지 존속)
- 독어독문학과: 폐지(2021.2.28.까지 존속)
- 골프산업학과: 폐지(2021.2.28.까지 존속)
- 불어불문학과: 유럽문화학과
- 자율전공학부, 창조융합학부: 자유전공학부

나. 행정대학

- 자치행정학과, 도시및정보행정학전공: 행정대학 도시행정학과
- 도시·지역계획학과: 공과대학 도시·조경학부(도시계획공학전공)
- 부동산학과: 부동산·지적학과

다. 경상대학

- 회계정보학과, 회계·세무학부 세무학전공: 회계학과
- 호텔경영학전공: 호텔관광학과
- 보험금융학과: 금융보험학과

라. 사회과학대학

- 지역사회개발학과: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 부동산학과: 행정대학 부동산학과
- 언론매체학전공, 신문방송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마. 과학생명융합대학

- 정보수리·전산통계학과군 정보수리학과, 수학과: 수리빅데이터학부(수학전공)
- 정보통계학전공, 전산통계학과: 수리빅데이터학부(통계·빅데이터전공)

- 유전공학과 또는 분자생물학과, 의생명과학과, 생명환경과학전공 또는 생명과학전공: 생명과학과
- 전자물리학전공 또는 물리학전공: 폐지(2021.2.28.까지 존속)
- 도시원예학전공, 원예학과: 생명환경학부(원예학전공)
- 식량자원학전공, 생명산업학전공, 농화학전공, 생명환경학전공, 식품환경안전학전공: 생명환경학부(바이오산업학전공)

바. 공과대학

- 토목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 조경학과: 도시·조경학부(조경학전공)
- 산업공학과, 자동차·산업·기계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전공: 폐지(2021.2.28.까지 존속)
- 자동차·산업·기계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공학부: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 자동차공학전공, 기계설계전공: 기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사. 정보통신대학

- 전자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 전자시스템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 제어계측공학전공, 전자제어계측공학전공: 전자제어공학전공
- 인터넷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
- 컴퓨터·IT공학부 전산공학전공: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 컴퓨터·IT공학부 정보공학전공: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 정보통신공학부 통신공학전공: ICT융합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 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ICT융합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 정보통신공학부 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 ICT융합학부 인공지능전공

아. 조형예술대학

- 회화과, 현대미술과: 융합예술학부(현대미술전공)
- 응용미술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또는 융합예술학부(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전공)
- 미술·디자인학부 공예디자인학전공, 생활조형디자인학과: 융합예술학부(생활조형디자인학전공)
- 실내환경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자. 재활과학대학

- 재활과학과: 재활공학과
- 인문대학 스포츠건강과학과, 운동처방학과, 건강증진학과, 재활과학대학 건강증진학과: 재활건강증진학과

차. 법과대학(3학년 2학기 ~ 4학년 재입학생 기준)

- 법학부 공법학전공, 법과대학 공법학전공: DU인재법학부(공법학전공)
- 법학부 사법학전공, 법과대학 사법학전공: DU인재법학부(사법학전공)
- 법학부 공공안전법학전공, 법과대학 공공안전법학전공: DU인재법학부(공공안전법학전공)

카. DU인재법학부(3학년 1학기 재입학생 기준)

- DU인재법학부 법학전공
- DU인재법학부 공직법학전공

2. 학과(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재입학 조치

가. 관광학부 관광통역학전공은 관광경영학과 및 호텔관광학과로 지원해야 한다.

나. 생활과학대학 폐지에 따라 광역화 모집단위인 생활과학대학으로 입학하여 전공이 확정되지

않고 제적된 자는 재입학 시 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또는 실내건축디자인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라. 보건과학부 물리치료전공 및 보건환경학전공은 간호보건학부 보건행정학전공으로 지원해야 한다.

바. 야간학과 폐지에 따라 주간 소속 학과로 지원해야 한다.

- 법학전공(야), 도시행정학과(야), 지역사회개발·복지학전공(야), 부동산학과(야), 경영학과(야), 회계정보학과(야), 관광경영학과(야), 산업복지학과(야), 문헌정보학과(야), 패션디자인학과(야), 실내건축디자인학과(야), 토목공학과(야), 회계정보학과(야), 관광경영학과(야), 행정학과(야), 무역학과(야), 건축공학과(야)로 재입학하는 경우 주간 소속 학과로 지원

3) 기타 본 모집요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대학교 학칙이 정한 바를 따름

1. 신청하여 배정받은 학과(전공)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학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850-5132
3. 전공배정신청서는 교무학사부로 제출하여 주십시오.